

법률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4조(감면 지방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제2항제4호 · 제5호 및 제8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